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509732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6. 5. 25.

판결 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675,1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4.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3. 5. 접수 제21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6. 2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신용보증한도 50,000,000원, 보증기한 2018.6.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주채무를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피고 A이 2014. 3. 29.경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25. 중소기업은행에 51,203,90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528,78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나.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4. 2.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2014. 3. 5. 접수 제21428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50,675,123원(= 51,203,904원 - 528,78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을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약 1달 전인 2014. 3. 29.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5. 2. 25.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해 위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A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B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014. 1. 15. 피고 A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 A에게 2014. 3. 18. 25,000,000원, 2014. 3. 28. 19,000,000원을 더 대여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 B에 그 주장과 같이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 B의 위 주장에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는 취지로도 보이거나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정현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빌라

[도로명주소] 부천시 원미구 E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내지 3층 각 282.20㎡

지하실 135㎡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제1층 제102호

벽돌조 42.66㎡

지하실 7.50㎡

[대지권의 표시]

부천시 원미구 C 대 715.9㎡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8분의 1. 끝.

